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81
----------	-------

발의연월일 : 2026. 8. 25.

발 의 자 : 김위상 · 이철규 · 이달희
조지연 · 김선교 · 신성범
박성훈 · 김종양 · 배준영
임종득 · 이종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구 등 폭염일수가 길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독거노인·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기를 틀지 못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은 법률상 명확한 규정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약관 및 정부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감면율이 낮고, 지역별 폭염 위험도와 인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폭염일수, 최고기온,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폭염 피크 기간(7월~8월) 동안 전기요금의 100분

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재난 속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등).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여름철 33도 이상 폭염 일수 증가 현황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폭염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폭염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하여 여름철(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전기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독거노인 가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구
4. 그 밖에 소득 수준, 가구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에너지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으로 발생한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16조의6에 따른 폭염위험지역 에너지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전기판매사업자 손실 보전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조의6(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등) ①</u>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여름철 33도 이상 폭염 일수 증가 현황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폭염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u>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폭염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하여 여름철(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전기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u> <u>1. 「노인복지법」에 따른 독거노인 가구</u> <u>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u>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 11. (생략) <u><신설></u> <u>12.</u> (생략)	<u>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u>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구 4. 그 밖에 소득 수준, 가구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에너지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으로 발생한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기금의 사용)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16조의6에 따른 폭염위험 지역 에너지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전기판매사업자 손실 보전 사업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	---